■ 아이사랑 적금 특약



제1조 (약관의 적용)

아이사랑 적금(이하 '이 적금'이라 함)의 거래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(예금과목)

이 예금은 정기적금(정액적립식)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3조 (가입대상 및 가입좌수)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2세 이하 개인으로 하며. 가입좌수는 1인 1계좌로 합니다.

제4조 (가입기간)

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연 단위로 합니다.

제5조 (가입금액)

이 적금의 가입금액 및 적립금액은 월 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원단위로 합니다.

제6조 (적립방법)

이 적금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일정일에 적립하여야 하며, 금액은 최저 1천원이상 20만원 이하 원단위로 합니다.

제7조 (기본이율)

이 적금은 가입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 적금의 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8조 (우대이율 적용)

① 이 적금의 우대이율은 첫거래 우대이율, 자동이체 우대이율, 주택청약저축 우대이율, 아동수당 우대이율이 있으며, 신규 가입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. 단, 중도 해지시에는 우대이율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- 1. 첫거래 우대이율 : 연 1.00%
 - 이 적금 신규 전 영업일 기준 부산은행 통장 개설 이력이 없는 경우
- 2. 자동이체 우대이율 : 연 0.30%
 - 이 적금 전체 불입 회차 중 2/3 이상 자동이체를 통해 불입한 경우
- 3.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 : 연 0.30%
 - 이 적금 해지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. 단, 적금 원 만기일 1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는 우대이율 제외
- 4. 아동수당 우대이율 : 연 0.30% 아동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이 입금되는 경우. 단 적금 원 만기일 전전월말 기준

BNK 부산은행

3개월 이내 1회 이상 입금 시 우대이율 적용 가능

② 이 적금은 이 특약에서 정한 우대이율 이외 별도 기준에서 정한 우대이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9조 (이자의 적용 및 지급)

- ① 이 적금의 적용이율은 제7조의 기본이율에 제8조의 우대이율을 더하여 결정되며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셈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합니다.
- ② 이 적금의 이자지급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합니다.

제10조 (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)

- ① 고객이 만기일 전에 이 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 이율 산식에 의거 산출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② 고객이 이 적금의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 적금의 만기 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11조 (제한사항)

- ① 이 적금의 일부 해지 및 계약기간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② 이 적금은 양도가 불가하며, 만기앞당김 지급은 가능합니다.
- ③ 이 적금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9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